

# 수수 금지 선물 처리

## 선물의 상담

### ●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

※ 가액, 사교·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

## 선물의 신고

### 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
※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

## 선물의 반환·인도

### ●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

### ●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

※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

## 조사 및 조치

### ● 위반 여부 조사

### ●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

### ● 징계, 과태료 부과 통보

공정하게 경쟁  
할 수 있는 사회  
청탁금지법이  
만들어 갑니다.



#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
# 선물 제공 가능 범위

**일반인**  
(적용대상 아님)

- 친구, 가족, 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-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
-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

**금액 제한없음**

**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**

-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-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-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

**100만원 이하**

**직무 관련 없음**

- 친구,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-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-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
**5만원 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10만원) 이하**

**직무 관련**  
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됨)

-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
- 각종 간담회,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
-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
**제공 불가**

**직무 관련**  
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인정안됨)

- 인·허가, 지도·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
-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-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

## 적용 대상

## 비적용 대상



### 행정 기관

#### 국가·지방 공무원

-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자체장 등
- 직업 군인
- 임기제(계약직) 공무원

####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

-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
- 공중보건 의사, 사법연수생

- 기간제·무기계약직 근로자

- 이장, 통·반장

- 사병, 사회복지요원

- 퇴직한 공무원

-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



### 언론사

####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
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
- 인턴기자
- 언론사의 지사·지국 소속 직원

-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

- 프리랜서 기자·작가

- 외신기자

-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(포털 사이트) 소속 임직원



## 적용 대상

## 비적용 대상



### 공직유관 단체

####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

- 비상임 이사, 감사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

-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



### 각급 학교

#### 대학교 교직원

- 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조교
-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
-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
- 대학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 등 임직원  
(※ 대학교 시간강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 (안)이 시행(19.8.1 예정)되어 교원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음)

- 겸임(초빙)교원, 명예교수
- 시간강사
- 민간병원 소속 의사, 간호사 등 임직원

#### 초·중·고등학교 교직원

- 기간제 교사
-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

- 방과 후 교사
- 자원 봉사자
-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

#### 유치원 교직원(※어린이집)

- 유치원 원장, 교사  
(※ 국공립/공공기관·직장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)

- 방과 후 교사  
(※ 어린이집 보육교사)